전세임대주택(긴급주거지원, 주거취약계층 등) 공급신청서

접수번호

신청인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		집전화	

신청인	☐ 긴급주거지원			
	☐ 주거취약계층	☐쪽방 거주자	☐비닐하우스 거주자	☐고시원·여인숙 거주자
		☐범죄피해자	☐노숙인·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	
	☐ 부도임대퇴거자			
	☐ 기타			

주택 및 자산현황 (신청자격별필요항목체크)	☐ 무주택	☐토지(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)	☐자동차(과세표준액 2천2백만원 이하)
	<작성요령 및 유의사항〉 **1.**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. **2.** 토지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. **3.**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.		

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인 (인)

시장(군수 · 구청장) 귀하

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(갱신계약 포함)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,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, 배우자 및 세대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자격 세부설명

☐ 긴급주거지원
「 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자

☐ 주거취약계층
쪽방, 고시원·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(주거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,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.)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시장 등"이라 한다.)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로서, 무주택세대주이고,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[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(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)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(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)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]

☐ 부도임대퇴거자
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주